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7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 주철현·홍성국·김병주

양정숙 • 이용우 • 임호선

신현영 · 오영환 · 한준호

장철민 · 김민철 · 이원택

최혜영 · 임오경 · 김남국

이성만 • 이수진 • 윤영덕

정청래 · 장경태 · 오기형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1조의2제4항).

법률 제 호

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의2제4항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2(과징금 처분) ① ~ ③	제31조의2(과징금 처분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	4
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	
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	
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	
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	
의 정도를 <u>감안</u> 하여 과징금을	<u>고려</u>
부과할 수 있다.	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